

제 1361 호

1987. 6. 25



발행처: 서울특별시청 남포동 1가  
발행인: 조 부 권 김 성  
전화: 731-8111-1  
이 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가동 8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 규 칙  
제 2180 호 :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중개정규칙..... 3
- ◎ 고 시  
제 369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8
- ◎ 공 고  
제 336 호 : 원인대학교부설제기..... 10  
제 347 호 : 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 10  
제 348 호 : 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 11

(이전계속)

영																			
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중이용서의 혜택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350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 면허취소.....	11
제 351 호 : 양동구역 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위한공람.....	12
제 352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 면허취소.....	12

㉓ 구 공 고

강동구제 47 호 : 판인사용승인.....	13
-------------------------	----

㉔ 예 규

제 486 호 :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정개정.....	14
------------------------------------	----

㉕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시행세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규칙제 2180 호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민방위국장으로 구성하며"를 "민방위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으로 구성하며"로 "7인내지 10인"이내의 과장으로"를 "7인내지 10인"이내의 과, 과장으로"한다.

제 6 조 제 3 항중 "다만, 과계가 없는 기관에서는 과 계장을 지칭할 수 있다"를 "다만, 과계가 없는 기관에서는 과 계장을 지칭할 수 있으며, 본청 실, 국문임보안담당관근산하사업소의 보안업무출자도 감독할 책임を負"한다.

제 10 조의 2 중 "제 10 조제 2 항의"를 "제 10 조제 1 항의"로, "지방공사의 장은"을 "지방공사의 장과 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이 임가된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으로 "수립시령"을 "작성·운동"으로 한다.

성·운동"으로 한다.  
제 12 조제 2 호중 "지방공사의 장"을 "지방공사의 장, 업무담당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 및 단체임직원"으로 한다.

제 16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 조의 2 (기업체등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①시장은 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 당해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본청의 실, 국의 불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불임보안담당관은 그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불임보안담당관은 당해 기업체 또는 단체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제 10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장이 작성, 운용하는 자체보안내규에는 제 6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안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 1 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 27 조중 제 1 항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 4 항 다음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7 조 (비밀의 분류) 제 1 항중 "비

일분류근거(비밀채부분류 지침 항목 및 분류기준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과장이 소속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⑤ 비밀을 결재,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32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2 조의 3 (비밀관리기록부의 제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작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서식의 개정 기타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제작성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비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

급비밀 전

급비밀 전

계 전

19

이 기 자 직 급 성명 ㉑

보관책임자직급 성명 ㉒

보안담당관직급 성명 ㉓

③ 신비밀관리기록부는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에 제 2 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사항중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을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함"으로 한다.

제 33 조중 제 5 항 다음에 제 6 항,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3 조 (대외비 문서관리)

⑤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달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관리할 수 있다.

⑦보편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 문서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5 조의 2 (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의 대출, 열람 및 파기는 규칙 제 36 조의 규정 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따로 비밀 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 35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5 조의 3 (연습관계부책)

①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장부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 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장부는 제 32 조 및 제 32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5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5 조의 4 (비밀의 지출) 규정 제 25 조 에 의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 38 조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승인은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8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장 각종 보안자료

제 6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1 조 (각종자료의 관리) 각종 설 계도면 및 지도는 편제실·과장이 관리하고 대외유출통제등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2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2 조 (비밀, 대외비문서의 발간통계 및 승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대외비문서를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사전통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보안대책의 타당성
4. 일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기타 보안관리상 지족여부

제 6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3 조 (자료의 배포 및 제공) 사실, 과장은 각종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포선을 판단 견성하고 배포선 이외에는 일체 배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포사항을 확인 조정할 수 있다.

제 6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4 조 (항공사진관리)

①복제된 항공사진중 국가 및 군사 보안 목적의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하여 동 보안목표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타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 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5조 (설계도서의 관리)

①설계도서는 작성,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의한 설계도서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며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닛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케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건당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류 복제, 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중 적당한 여백에 규정 제34조에 정한 사본군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 복사할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 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인원을 분담보안담당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 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6조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①주요건설사업은 계획수립시 미리 국가안보면목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업무협의회 의 심의를 거친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 방책
  -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조건
  - 나. 방호시설(내외곽 포함)
  - 다. 방호(경비) 활동대책
  - 라. 기타 시설선정상 필요한 대책
2. 통신방호 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의 적용여부
5. 기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부서간 군계접 사건협의 조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36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78 호(78.7.31)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에 의거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영등포구청 시행 해군본부-신남시장간 도로개설 공사의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을 인가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동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장 음함.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 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공

발 하고 있음

1987.5.28

서울특별시 장

고 시 개 요

- 1) 사업장 위치  
해군본부-신남 시장간 도로개설 공사  
시점 : 신길동 1824  
종점 : 신길동 1828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해군본부-신남 시장간 도로개설 공사
- 3) 사업의 규모  
B = 8 m L = 160 m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영등포구청장)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7.12.30
-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및 건물 조서  
첨부 :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 부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지 목적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 의 의 권리명세
1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769	대	10.0	국 (국방부)	
2	" 1769-1	대	37.0	대한민국의 2 인	
3	" 1771	대	12.0	국 (국방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역	지 적 면 적	소유자주소상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	계	
4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771-1	대	187.0	국(국방부)		
5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868	대	6.0	국(국방부)		
6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868-1	대	112.0	국(국방부)		
7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782-1	대	57.0	국(국방부)		
8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869	대	202.0	경 경 의	서울시동대문구 상봉동 115-30	
9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870-1	대	59.0	김 도 술	서울시성북구 중앙동 7-42	
10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812	대	249.0	대한민국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 조	용도	공부상 면적	저축 면적	소유자주소상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	계	
1	서울시영등포구 신길동 1869	복조외잡	주택	36.36	36.36	김재경	서울시영등포구 신길동 1869 번지	
						김석자	서울시관악구신림 동 726-44 호	
						김덕자	서울시구로구오류 동 147-13 호	
						김경수	서울시영등포구 신길동 1869 번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고</div>		1987. 5.28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6 호  관인재 교부및폐기  서울특별시립 강남구 보건소장의 직 인 및 개인을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3조·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함을 통규칙 제 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 사용 및 폐기일자: 1987.6.1 2. 사용직인 가. 서울특별시립 강남구 보건소장 의 인 나. 강남구 보건소 제인 3. 폐기직인 가. 서울특별시립 강남구 보건소장 의 인 나. 강남구 보건소 제인			
구분	재	기	관 인	교 부	관 인
인	 		 		
중인명	강남보건소장의 인		강남보건소장의 인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7 호  전기공사업체 행정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29조 제 2 항 3 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이를 통법제 4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함.  1987. 5.28.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상 호	대 표	소재 지	위 관 내 용	행정처분 내용
630	태광전력	이규병	강동구삼전 동 133	전기공사실적 미보고 (3년 연속)	영업정지 2개월 (87. 5.30-87.7.29)

<p>①서울특별시 공고 제 348 호</p> <p>전기공사업체 행정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31 조제 1 호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업</p>		<p>제에 대하여 행정처분(면허취소) 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함.</p> <p>1987. 5. 28</p> <p>서울특별시장</p>			
면허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처 분	사 유
152	명보전기㈜	강동구성내동 429-3	구자철 이장문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 (기술자 미제용)
<p>②서울특별시 공고 제 350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p> <p>전기공사업법 제 31 조제 1 호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 내역</p>		<p>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p> <p>1987 년 5 월 28 일</p> <p>서울특별시장</p>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사 유
제 2 종 제 104 호	아주건설	김광식	동대문구 신설동 42-23	85.5.27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 - 동법 제 31 조 1 호 소위 (면허취소)
제 2 종 제 442 호	남강건설(주)	변철현 안택진	동대문구 달실리동 952	.	.
제 2 종 제 1129 호	진성전기	김경기	동대문구 중화동 311-60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51 호**

양동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9 호 (84. 7.10)로 사업시행인가된 양동구역 제 1 지구에 대하여 동지구 사업시행자인 유화개발주식회사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제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동사업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 특수자에게 관하여는 본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7. 5.28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개요

1) 시행기간 변경  
기정 : 84.7.10-87. 7.10  
변경 : 84.7.10-89.12.31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3) 공람기간 : 87.5.29-87.6.28

4)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 352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통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7. 5.28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취소일자	비 고
86	위코리아건설	강남구논현동 61-5	김석재		면 허 취 소
956	귀라건설(주)	강남구삼성동 107-5	안갑숙		"
961	대흥전기통신공사	강남구반포동 82-1	이삼열		"
1252	삼천기전(주)	강남구역삼동 601-15	이광원		"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 47 호**

**관 인 사 용 승 인**

강동구 잠실제 4 동장, 암사 3 동장 (민원사  
무전용) 관인 및 제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  
및 개각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 정인명 : 강동구잠실제 4 동장, 암사 3 동  
장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2. 사용개시일 : 1987.5.1
3. 폐기처분일 : 1987.5.31
4. 관인의인명 (폐기및개각인)

1987.5.28.

강 동 구 청 장

아 래

	폐 기 인	개 각 인
인 영	 	 
공인명	잠실제 4 동장 (민원사무전용)	잠실제 4 동장 (민원사무전용)
인 영	 	 
공인명	암사제 3 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암사제 3 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예 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예규제 486 호

1987.5.28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정개정

부 칙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이 규정은 87.6.1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규정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	고	
시	장	실		서 실 01	서실	01-02	
부	시	장		" 02			
기	획	관	리	실	서	기 01	
울	림	회	준	비	단	서	단 01
공	보	관		서	관	01	
감	사	관		"	"	02	
내	무	국		서	국	01	
재	무	국		"	"	02	
보	전	사	회	국	"	03	
산	업	경	제	국	"	04	
도	시	계	획	국	"	05	
전	실	판	리	국	"	06	
환	경	녹	지	국	"	07	
교		통		국	"	08	
상	하	수	국	"	"	09	
민	방	위	국	"	"	10	
경		활	국	"	"	11	
소	방	본	부	"	"	12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척번호	비	고					
기획 관 리 실	기	획	담	담	관	기	획	서	과	01	서과 01-80
	심	사	분	석	담	담	관	심	사	02	
	예	산	담	담	관	예	산	"	"	03	
	부	자	관	리	담	담	관	부	자	04	
	시	정	개	발	담	담	관	시	정	05	
	법	무	담	담	관	법	무	"	"	06	
	통	제	담	담	관	통	제	"	"	07	
	기	술	심	사	담	담	관	기	술	08	
올 림 체 준 비 단	올	림	체	준	비	단	올	림	체	09	
	올	림	체	준	비	단	올	림	체	10	
	관	장	담	담	관	관	장	"	"	11	
	문	화	담	담	관	문	화	"	"	12	
	올	림	체	준	비	단	올	림	체	13	
	올	림	체	준	비	단	올	림	체	14	
감 사 관	감	사	담	담	관	감	사	"	"	15	
	조	사	담	담	관	조	사	"	"	17	
	사	회	지	도	담	관	사	회	지	18	
내 무 부	총	무	과	과	총	무	과	"	"	19	
	외	전	과	과	외	전	과	"	"	20	
	인	사	과	과	인	사	과	"	"	21	
	행	정	과	과	행	정	과	"	"	22	
	시	민	과	과	시	민	과	"	"	23	
세 무 부	세	마	술	지	도	세	마	"	"	24	
	회	계	과	과	회	계	과	"	"	25	
	세	정	과	과	세	정	과	"	"	26	
	세	무	지	도	세	무	지	"	"	27	
	관	장	과	과	관	장	"	"	28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	고
보	보	건 위 생 과	보 위	서 과 29		
결	의	약 과	의 약	" 30		
사	사	회 지 과	사 회 지	" 31		
회	회	회 지 과	회 지	" 32		
국	부	내 청 소 년 과	부 청 소 년	" 33		
산	상	공 과	공	" 34		
		연 료 과	연 료	" 35		
		가 스 과	가 스	" 36		
		농 축 과	농 축	" 37		
		정 양 과	정 양	" 38		
국	물	가 지 도 담 당 관	물 가 지	" 39		
도	도	시 계 회 과	시 계 회	" 40		
		시 설 계 회 과	시 설 계 회	" 41		
		구 구 회 정 리 과	구 구 회 정 리	" 42		
		재 재 개 발 과	재 재 개 발	" 43		
회	회	지 지 과	지 지	" 44		
건	건	설 행 점 과	설 행 점	" 45		
		도 로 지 도 과	도 로 지 도	" 46		
		전 주 태 기 회 과	전 주 태 기 회	" 47		
		주 주 태 개 회 과	주 주 태 개 회	" 48		
		국	국	주 주 태 개 양 과	주 주 태 개 양	" 49
관	청	소 경 과	소 경	" 50		
		환 환 과	환 환	" 51		
		녹 녹 과	녹 녹	" 52		
		지 지 과	지 지	" 53		
교	교	목 기 회 과	목 기 회	" 54		
		운 수 1 과	운 수 1	" 55		
		운 수 2 과	운 수 2	" 56		
상	업	무 과	무	" 57		
		급 수 과	급 수	" 58		
		수 수 과	수 수	" 59		
		하 하 과	하 하	" 60		
		국	국	수 수 전 수 과	수 수 전 수	" 61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기번호	비	고
민 방 위 국	민	방	위	파	민	방	서 과 62		
	문	영	파	문	영	"	" 63		
	비	상	제	비	상	"	" 64		
중	합	민	원	실	중	민	"	65	
소 방 본 부	소	방	정	과	소	방	"	66	
	탐	호	과	탐	호	"	" 67		
	지	도	과	지	도	"	" 68		
경 찰 국	경	무	과	경	무	"	" 69		
	면	화	과	면	화	"	" 70		
	통	실	과	통	실	"	" 71		
	교	통	과	교	통	"	" 72		
	경	비	과	경	비	"	" 73		
	작	전	과	작	전	"	" 74		
	보	안	과	보	안	"	" 75		
	수	사	과	수	사	"	" 76		
	형	사	과	형	사	"	" 77		
	정	조	과	정	조	"	" 78		
대	공	과	대	공	"	" 79			
외	사	과	외	사	"	" 80			
구	중		로		서	구	01	서구 01-17	
		중			"	"	02		
			산		"	"	03		
	용		동		"	"	04		
	성	대	문		"	"	05		
	동		북		"	"	06		
	성		부		"	"	07		
	드		봉		"	"	08		
	은	대	경		"	"	09		
서		문		"	"	09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 고
구	마 강 구 명 동 관 장	포 서 로 포 작 악 남 동		서 구 10	
				" 11	
				" 12	
				" 13	
				" 14	
				" 15	
				" 16	
결            시	중 종 남 서 동 용 성 철 마 영 성 노 동 서 북 남 내 강 관 장	부 로 문 문 문 산 부 리 포 포 동 전 부 부 부 부 부 부 남 악 서 동		서 경 01	서경 01-25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	고					
경 관 서	종 구 서 실	암 트 초 정					서 경 22							
							" 23							
							" 24							
							" 25							
소 방 서	중 중 성 성 용 동 영 부 서 장 남 장	로 부 동 산 문 포 부 남 부 서 등	대 동			중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서 소 01	서소 01-12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거 관 리 실	서 건	물 자	시 립 지	대 지	학 소	교 소	서 대 01	서사 01-58						
							" 02							
윤 임 평 단	중 서 시	합 물 용	운 부 복	동 별 시	관 립 세	리 운 종	사 업 03							
							동 장 04							
							문 화 05							
내 부 국	서	윤	복	별	시	공	우	원	교	육	원	06		
보 건 사 회 장	보 동 영 아 정 서 근 구 마	진 부 영 아 정 서 근 구 마	관 부 동 아 정 서 근 구 마	경 부 동 아 정 서 근 구 마	업 부 동 아 정 서 근 구 마	구 부 동 아 정 서 근 구 마	소 원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고
보건사회국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사사 16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동부근로청소년회관	" 17	
	부녀보호소	부녀보호소	부녀보호소	" 18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 19	
산업경제국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	농지	" 21	
	공업시험소	공업시험소	공시	" 22	
도시계획국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개발	" 23	
건설관리국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	" 24	
	건설자재시험소	건설자재시험소	건설자재시험소	" 25	
	건설자재사업소	건설자재사업소	건설자재사업소	" 26	
	동부부건설사업소	동부부건설사업소	동부부건설사업소	" 27	
	서부부건설사업소	서부부건설사업소	서부부건설사업소	" 28	
	남부부건설사업소	남부부건설사업소	남부부건설사업소	" 29	
환경녹지국	서부위생처리장	서부위생처리장	서부위생처리장	" 31	
	북부위생처리장	북부위생처리장	북부위생처리장	" 32	
	녹지사업소	녹지사업소	녹지사업소	" 33	
	남산공원관리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 3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35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 36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37	
교통국	자동차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	" 38	
	차량경비사업소	차량경비사업소	차량경비	" 39	
상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한강관리사업소	한강관리	" 40	
	북부수도관리사업소	북부수도관리사업소	북부수도관리	" 41	
	남부수도관리사업소	남부수도관리사업소	남부수도관리	" 42	
	팔당수원지사사무소	팔당수원지사사무소	팔당수원지사사무소	" 43	
	구의수원지사사무소	구의수원지사사무소	구의수원지사사무소	" 44	
	죽도수원지사사무소	죽도수원지사사무소	죽도수원지사사무소	" 45	
보광동수원지사사무소	보광동수원지사사무소	보광동수원지사사무소	" 46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고	
상 하 수 국	노	진수원	지사무소	노수	서사 47	
	역	동포수원	지사무소	노수	" 48	
	선	유수원	지사무소	선수	" 49	
	김	보수원	지사무소	김수	" 50	
	암	사수원	지사무소	암수	" 51	
	대	현산배수	지사무소	대배	" 52	
	만	리동배수	지사무소	만배	" 53	
	청	담배수	지사무소	청배	" 54	
	우	면산배수	지사무소	우배	" 55	
민방위국	민	방공경보통제소	경보	" 56		
소 방 문 부	소	방	학	소학	" 57	
	합	공	내	합공내	" 58	
	청	와대소방	청	청대	" 59	
경 관 국	101	경비단	101	경서대 01	서대 01-14	
	국	회경비대	국	경	" 02	
	제	1기동대	제	서기	" 03	
	정	부종합청사	정	부합	" 04	
	김	포국재공합경관대	김	포국재공합경관대	" 05	
	22	목별경호대	22	목경	" 06	
	105	전무경관대	105	전경	" 07	
	201	"	201	전경	" 08	
	602	"	602	전경	" 09	
	603	"	603	전경	" 10	
	605	"	605	전경	" 11	
	606	"	606	전경	" 12	
	607	"	607	전경	" 13	
	울	림곡경비대	울	림곡경	" 14	
국	중	로구보건설소	중	로구보서보 01	서보 01-17	
	중	구	중	구	" 02	
	용	산구	용	산구	" 03	
	성	동구	성	동구	" 04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고
구	동대문구	보검소	동보	서보 05	
	성북구	"	성북보	" 06	
	도봉구	"	도봉보	" 07	
	은평구	"	은평보	" 08	
	서대문구	"	서대문보	" 09	
	마포구	"	마포보	" 10	
	강서구	"	강서보	" 11	
	구로구	"	구로보	" 12	
	영등포구	"	영등포보	" 13	
	동작구	"	동작보	" 14	
관악구	"	관악보	" 15		
강남구	"	강남보	" 16		
강동구	"	강동보	" 17		

사 령

◎ 1987년 5월 23일자

명제 15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윤영진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87.5.23 ~ '88.5.14)	관악구보검소	지방보검기사보

◎ 1987년 5월 25일자

명제 15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재석	인천직할시 간송미술관 명함	강동구송파동	지방행정서기보

명제 15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정재봉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7급 1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신구

1987년 5월 28일사				경계 159 호
성명	발령	사항	원부서	직급
정진교	총무부	경사책정소과전근부 ('87.5.28-'87.12.31)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유길	부속	"	공무총무과	"
김유길	부속	"	공무총무과	지방행정서기
김유길	부속	"	공무총무과	"
				경계 160 호
성명	발령	사항	원부서	직급
김박이	근로전관	업무과과장 ('87.5.28-'87.12.31)	고용기획과	지방행정주사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김박이	강릉	"	관악로구	"

상 명		발 행 사 항		원 부 서	적 금	
◎ 1987년 5월 29일자 <span style="float: right;">총액 161호</span>						
의 선 식	문수 1과 파견업체			도 동 구	지방행정서기	
서 승 철	"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영 하	"			마 포 구	지방행정서기	
정 철 호	문수 1과 파견 ('87.5.30 ~ 10.31)			도 동 구	지방행정주사보	
조 길 서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서기보	
유 종 신				마 포 구	지방행정서기	
◎ 1987년 6월 5일자 <span style="float: right;">총액 162호</span>						
상 명	발 행 사 항		원 부 서	적 금		
정 세 태	경부합동민원실 파견근무출 명함. ( '87.6.7 ~ 12.6 )		대 부 구	지방행정주사		
<u>공 무 과 학 어 령 영 령</u>						
어 령 자			무	어 령 국	기 간	정 비
소 속	직위 (직급)	직명				
감사담당관	지방토목과	윤종문	장동·도동원·쓰레기 처리장 건설자료수집	서 구	'87.5.27 ~ 6.6	계약자 부 담
장 소 파	지방회공과	강용숙	옥동 3차아파트 설비 자재점수 및 기술감독	미 국	'87.5.30 ~ 6.8 ( 22일간 )	계약자 부 담
기술심사 담당관실	지방건축과	김봉환		서 구		
특동지구 개발사업소	기계과	장교희				
	기계과	김동수				
<u>사 랑 품 문 관</u>						
소 속	직 명	장 소	사 랑 품	과 인		
강남구	임대 2동	지방행정서기	마 포 원	'87.6.25 07:00		